



가정상담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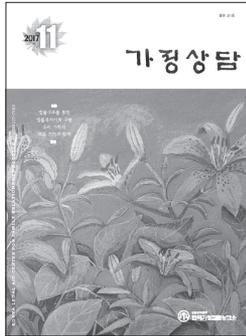


본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창립 61주년 기념 2017년 세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관련기사 29면)



본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신목고등학교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교사(10명), 10월 29일에는 동일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30명)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0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심포지엄 ❶
- 20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❸
- 22 • 가정폭력상담실
- 26 • 인터넷 상담
- 27 • 새로 들어온 책과 자료집
- 28 • 결혼과 인생(177) 만화일기
 밥하는 엄마 _ 장차현실
- 29 • 상담소 소식
- 32 • 지부 소식
- 34 • 상담통계
- 35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노년이혼의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 가족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9월에 발간한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생활 20년을 넘겼음에도 이혼을 택한 부부가 3만 2594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10만 7328쌍)의 30.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2017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국내 65세 이상 노년의 이혼 건수는 9011건으로 2015년보다 504건이 늘어난 것이며 연간 노년 이혼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년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이혼 건수가 2015년 보다 1825건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혼은 줄고 있지만 노년이혼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이혼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에는 1744건이던 것이 2005년에는 3505건, 2010년에는 6080건, 2015년에는 8507건이었다가 2016년에는 9011건에 이른 것입니다.

상담소의 통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담소의 2016년 상담통계를 보면 2015년에 비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 및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18.1%(996건)→20.7%(1,038건), 남성 27.2%(524건)→31.9%(626건)). 특히 10년 전인 2006년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4.9배, 남성은 10.4배 증가하여 노년층의 이혼상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담소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 전반과 관련하여 이미 예견해 왔던 것입니다.

노년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가 갑작스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 초부터 갈등과 마찰이 시작되었으나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 등 바쁜 일상 속에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돌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결혼 초기 처럼 다시 부부 만 남게 되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더욱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지금 노년의 부부들이 젊었던 때 갖고 있던 결혼관과 이혼관에 모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년들의 사고 역시 이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전반적인 상황에 거부감이 없어 결국 노년이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들 또한 이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기도 하고 또 각자 자신들의 생활에 치여 부모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갈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십 년 이상 쌓여온 서로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기에 신뢰와 애정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렵고, 인생의 마지막 결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정이 너무도 확고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졸혼’을 꿈꾸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졸혼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하는 일종의 별거인 셈인데, 부부는 각자 자유를 누리며 자녀들도 부모의 갈등 상황에 난처해지거나 이혼 때문에 피해보고 번거로워지는 부분을 피할 수 있어 노년 부부 사이에 일종의 대안처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백과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졸혼’이 과연 사회적으로도 합당한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절차 없이’라는 부분은 일견 대단히 자유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배우자 중 일방에게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연예인 등의 예에서처럼 부부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혹은 재산의 분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졸혼이 부부 간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각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만일 졸혼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된다면 원하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회 전반의 위기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노인의 경제적 문제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복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였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세대가 사회의 짐이 되는 듯한 현실이지만, 노년이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기에 사회 전체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깊이 있는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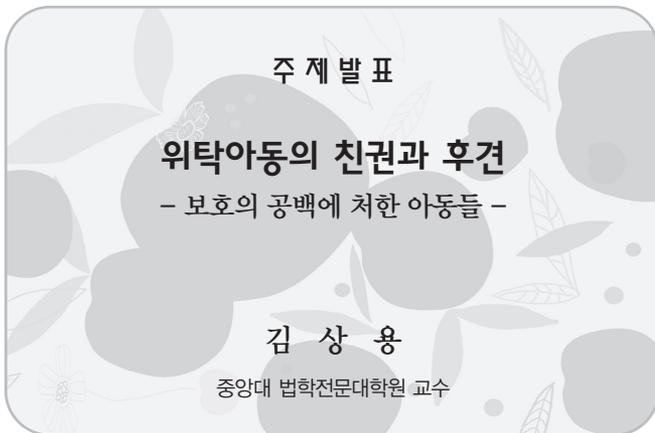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노년의 위기가 곧 노년이혼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개개인이 혼인생활, 가정생활에서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움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란 없으니 세대를 막론하고 혼인과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 그 시간만큼을 가정과 개인의 삶의 질을 빼앗고 있는 것이니만큼 - 인간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이야 말로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

집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III ①*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1)



I. 들어가는 말 - 문제의 소재

미성년자녀에게 형식적으로는 친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소재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아서 친권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특히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위탁이란 부모가 빈

곤,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아동보호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탁가정에 맡긴 후에 소재가 불명해지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자녀(위탁아동)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위탁아동에게는 형식적으로는 친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친권자가 없는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친권의 공백상태는 특히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위탁아동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여권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곤경에 처한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초에 우리사회에서 가정위탁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탁가정에 어려움을 안겨준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 지난 11월 3일 열린 본소의 2017년 세 번째이자 창립 61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제반 입법과정에 앞장 서온 본소에서 위탁가정에 대한 법과 정책에서 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 보았다. 이 심포지엄에 발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2회에 걸쳐 소개하는데 이번 호에는 주제발표를 실는다. 지면관계 상 각주는 생략하였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동안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숙제로 남아 있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진작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동복지에 있어서 여전히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율의 저하를 걱정하는 우리사회가 이미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 모습을 보여 왔는지 스스로 묻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II. 입법을 통한 해결의 시도

1.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의 발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김춘진 의원실과 협력하여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6년 19대 국회의 임기만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 법안에는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제16조(친권행사의 정지 등) ① 가정법원은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친권행사의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1.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1년 이상 위탁아동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친권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을 남용하여 위탁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의 정지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탁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친권행사의 정지 기간 중에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행사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후견인이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① 위탁아동의 친권자가 소재불명이어서 자녀(위탁아동)에 필요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의료기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등), 소재는 파악되지만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서 교류가 단절된 경우, 친권행사를 하지 않거나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위탁아동의 통장에서 수급비를 인출해 가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위탁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¹⁾에 의하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친권상실선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효과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친권행사의 정지’란 부모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친권행사의 정지’는 최근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입양특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가 입양기관에 입양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자녀를 인도하는 경우, 그 때부터 부모(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어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친생부모는 입양에 동의한 후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입양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제12조 제5항), 입양의 동의를 철회하면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제22조 제2항). 따라서 친생부모가 입양 결정을 후회하는 때에는 입양의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입양기관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의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후견인을

1) 2012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령 등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되고(후견인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위탁부모는 사실상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게 된다(즉, 위탁부모는 후견인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임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위탁아동이 여권발급을 신청하거나 은행에 통장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아동의 수술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의 자격으로서 동의를 하게 될 것이다. 위탁아동이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후견인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실상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위탁부모가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③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의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친권행사의 정지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도 부모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한 때에는(즉 제1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 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행사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4항은 후견인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서 위탁아동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후견인이 되었는데, 삼촌이 후견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식불명, 중대한 질병, 소재불명 등) 위탁아동의 복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위탁아동의 복리 실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17조(대리권, 관리권 행사의 정지) ①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부모, 가정

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행사의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① 대리권, 관리권 행사의 정지는 친권의 일부정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탁아동의 부모(친권자)가 자녀의 통장에서 수급비를 인출하여 소비한다거나 자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행사만을 정지시키는 것으로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친권행사의 전면적 정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권, 관리권 행사의 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② 대리권, 관리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우에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위탁부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의 대리권, 관리권 분야에서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위탁아동의 통장에서 수급비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위탁아동의 부모(친권자)가 다시 대리권과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면 법원은 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대리권과 관리권 행사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처분) ①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위탁부모,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6조의 친권행사의 정지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48시간 내에 부모의 친권행사 또는 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가정법원이 제17조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 행사 정지의 임시처분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임시처분은 집행력을 갖는다.

[해설]

예를 들어 위탁아동이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임시처분을 하고,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후견 대행자가 수술에 동의함으로써 위탁아동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친권자)의 대리권과 관리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리권과 관리권 분야에서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민법상 친권규정의 개정

-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 제도의 도입

2014년 민법 일부 개정에 의하여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다(2015. 10. 16. 시행). 혹자는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에 규정되어 있었던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가 민법에 도입되었으므로,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입법목적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피상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제16조-제18조가 갖는 의미는 단지 친권행사의 정지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친권행사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중요하다).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1차적으로 위탁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이고, 2차적으로는 위탁부모로부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받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다. 이들에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친권의 정지와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로 청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

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201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동법 제46조 이하)를 보면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의하면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7호)”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이 청구권자에 포함된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법체계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1차적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인도를 요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의 정지 또는 제한을 청구함으로써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그 반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실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외되었다면(법안의 원안에는 빠져 있었다), 이 제도는 실제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청구권자로 열거되어 있는 그 외의 사람(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이 직접 법원에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피해아동은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인 경우도 많다), 아동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현실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한다고 해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아동이 변호사를 선임

하여, 그 변호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누구에게 청구권이 주어지는가는 친권의 정지나 상실과 같은 제도 그 자체의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2014년 민법 일부 개정에 의하여 친권상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으나, 문제는 청구권자로서 누가 규정되었는가에 있다. 민법은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열거하고 있다(제924조, 제925조). 위탁아동의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후견이 개시되려면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의 선고를 받아야만 한다면(이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누군가가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설명 찾는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이것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라고 해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다는 것은 자녀의 심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친권상실선고란 간단히 말하면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인데, 자녀가 법원에 대해서 부모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 본인에게도 심리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이름으로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는 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녀에게는 어차피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녀의 이름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려면 우선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자녀에게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직접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권

상실선고의 심판에서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특별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녀를 대리하는 구조에서 굳이 미성년자녀를 청구의 당사자로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녀의 이름을 걸고 어른들(특별대리인과 부모)이 대리전을 치루는 것과 다르다.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면, 실제로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될 어른(특별대리인)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하여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며, 굳이 자녀의 이름을 내세워서 아동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본다면,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에 이해관계인(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스스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위탁아동의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위탁부모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스스로 특별대리인이 된 후 위탁아동의 이름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법원(또는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상실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례임을 알 수 있다(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또한 이해관계인, 사회복지기관의 장 등에게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다(대만).

III. 재판을 통한 해결의 시도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의 시도

- 전반의 성공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친권과 후견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탁아동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방법으로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는 상당한 비용의 발생을 수반하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무법인 청신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위탁아동

을 위한 후견인 선임 청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여러 건의 후견인 선임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사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위탁아동이 기아로 발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이다. 위탁부모가 민법 제93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산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친권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6. 10. 5. 자 2016년 단200267 심판;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을 한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2016. 12. 16. 자 2016년 단50924 심판). 또 다른 유형은 위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친생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그 후 소재불명이 되어 자녀가 위탁가정에서 장기간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친생부모가 소재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후견개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가정법원 2016. 9. 27. 자 2016년 단100177 심판).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례에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소재불명인 사건

(1) 사실관계

「위탁아동 갑은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성명 등 인적사항 불상)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약 7개월이 되었을 무렵 거리에 유기되었으며, 경찰에 의해서 영아원에 인도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았다. 약 4개월 후 부모인 을과 병이 영아원에 찾아와 다시는 아이를 유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갑을 데려갔으나, 그 후 병은 가출하고 을은 약 두 달 후 다시 갑을 유기하였다. 갑은 만 4세가 되던 해 보육원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동안 부모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갑이 만 5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정은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던 갑을 후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며 돌봐주었다. 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2년여 동안 갑을 후원하다가 구청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여 갑의 위탁부모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갑

을 양육하고 있다. 정이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였을 때 구청 소속 복지담당공무원이 갑의 아버지 을을 찾아서 가정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정과 을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갑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여 을에게 갑을 한번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갑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중국으로 단체여행을 가게 되어 여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권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갑의 아버지 을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시청공무원의 도움으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겨우 여행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갑과 정 모두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정은 갑을 입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의 아버지인 을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입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갑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친부모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지만, 위탁부모에 대해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학업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위탁부모인 정은 갑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갑을 대리하여 휴대폰을 개설해 줄 수도 없고, 갑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 수도 없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단수여권밖에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경유지를 거치는 비행기는 탈 수가 없다. 만약 갑이 급히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겨도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권도 갖지 못한다.」

(2) 1심 심판(대구가정법원 2016. 9. 27. 자 2016년 단100177 심판)의 쟁점과 비판

대구가정법원은 위탁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는데, 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려면 친권자가 없거나,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위의 심판은 친권자의 소재불명을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후견개시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박이 가능하다.

1) 부모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친권의 소멸

① 먼저 부모의 소재불명으로 친권이 소멸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비혼모 A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비박스에 아기 B를 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법률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A는 출산과 동시에 B의 법률상 어머니의 신분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B의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 제1항: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 후 B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는데(동법 제3조 제1항), 이는 B에게 더 이상 친권자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 법체계상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A가 소재불명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것도 아니고 친권상실신고를 받은 것도 아니라면 여전히 B의 친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친권자의 소재불명을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후견개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A가 B의 출생신고를 한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와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를 나누어서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경우라고 해도 법률상의 모자관계(친자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혼인외의 자의 어머니가 법률상 모(母)의 신분을 갖는 한, 친권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설령 혼인외의 자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A가 B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

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상태가 아무리 오랜 기간 지속되어도 친권이 계속 존속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하여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여부는 법률상 모자관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친권자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출생신고에 의해서 비로소 친자관계가 발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록됨으로써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다). 이 점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기록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가정법원은 기아로 발견된 위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근거로 친권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친권상실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위탁아동에게 친권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출산에 의해서 위탁아동과 생모 사이에는 법률상 모자관계가 발생하였고, 생모는 당연히 친권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후 생모가 자녀를 유기하고 소재불명인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친권이 소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판례와 학설

기존의 판례와 학설도 친권자의 소재불명을 친권의 소멸사유로 보아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후견개시의 사유로 인정하여 왔다. 대법원 1956. 8. 11. 4289민상 289 판결은 “민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기관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둔 법의(法意)가 현실생활에 있어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비록 그 친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

턴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그 행방을 감추었으며 장기간 소식이 없어 그 귀래(歸來)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0호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되므로, 민법에 정해진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으로 될 사람이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예: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이장, 통장, 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민법」 제93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와 같은 서면 등)을 첨부하여 다음 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실무해설서 「가족관계등록실무」는 미성년후견 개시 사유로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친권자가 없는 경우란 친권자의 사망·실종선고·장기부재·행방불명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부모의 친권상실선고 등과 같이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011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제927조의2 규정(2013. 7. 1. 시행)은 제1항 제4호에서 부모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친권의 소멸원인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명문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해석론

① 이어서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부모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927조의2는 2011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부모의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의 일방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모의 다른 일방을 새로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9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친권이 소멸하는 사유로서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견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하여지지 않은 부모의 다른 일방이 있으면 우선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하여지지 않은 부모의 다른 일방 등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를 하였어도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아버지 A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어머니 B가 그 후 사망하고, A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았다면, 새로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이 없으므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후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후견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견의 개시는 곧 친권자가 없는 상태, 즉 친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② 한편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는 단독친권자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즉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즉 단독친권자의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하여지지 않은 부모의 다른 일방이 새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할 점은 단독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부모의 다른 일방에게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모의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다른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부모의 다른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등) 친권자 지정 청구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이혼 시 아버지 A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소재불명이 되었고, 어머니 B는 그 사이에 사망하였다면, 새로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이 없는 경우이므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후견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견의 개시는 곧 친권자가 없는 상태, 즉 친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항고심 결정(대구가정법원 2017. 5. 29. 자 2016브1037 결정)의 쟁점과 비판

제1심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인 위탁부모가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항고심 법원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는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없고, 다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유일한 친권자인 경우까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후견과 친권이 충돌할 염려가 있으므로, 친권상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미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000이 있고, 000에 대한 친권상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항고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박이 가능하다.

- 1)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는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없고, 다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유일한 친권자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

① 위 결정은 단독친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친권상실 선고를 거치지 않으면 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는 근거로서 두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는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없고, 다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유일한 친권자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항고심 결

정에 따르면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는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모의 다른 일방이 생존해 있어서 친권자로 새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모의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 등의 사유로 없는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아버지 A가 자녀 C를 위탁가정에 맡기고 소재불명이 되었는데, C의 어머니 B가 있는 경우,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제909조의2가 준용되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예를 들어 어머니 B가 이미 재혼하여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후견이 개시되어 위탁부모는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아버지 A가 자녀 C를 위탁가정에 맡기고 소재불명이 되었는데, C의 어머니 B가 사망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위탁부모는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없다.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단독친권자 A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부모의 다른 일방인 B의 생존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단독친권자 A가 장기간 소재불명이고, 부모의 다른 일방인 B가 이혼 후 이미 사망하였다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고심 결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A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거쳐야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인데, 단독친권자 A의 소재불명이라는 동일한 사정하에서 부모의 다른 일방인 B의 생존여부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② 만약 위 결정의 논리대로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는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친권자 아닌 부모의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 등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논리가 곧 소재불명인 단독친권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하지 않으면 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친권자에게 민법 제

927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 즉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소멸이 의제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다른 일방이 사망 등의 사유로 없다면, 민법 제928조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후견이 개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부나 모를 상대로 굳이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아도 이해관계인 등이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제932조 제1항).

③ 위 항고심 결정은 위탁아동 갑의 유일한 친권자는 아버지 을이고, 어머니 병은 사망 등의 사유로 없다는 전제하에서 후견개시의 사유가 없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갑에게는 출생 당시부터 어머니가 없었고, 처음부터 아버지 을이 유일한 친권자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위탁아동 갑이 혼외의 자로 출생하였을 때 갑과 어머니 병 사이에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성립하고, 그 결과 병이 단독친권자가 되었다. 그 후 아버지 을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을과 병의 공동친권이 성립하게 되었다. 즉 위탁아동 갑의 아버지 을이 처음부터 단독친권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 후 병이 가출하여 소재불명인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병의 친권은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을이 단독친권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후 을도 소재불명이 됨으로써 을의 친권도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을이 단독친권자가 된 경위는 비록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 927조의2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만, 부모 쌍방이 공동친권자이었다가 그 중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그리고 그 단독친권자의 친권이 소멸하였다는 점도 같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독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일 뿐, 어떤 경위로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되었는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위 법규정의 적용여부가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으나 친권자가 될 의사가 없어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이미 사망하여 없는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이든 친권자 지정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후견을 개시시켜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2)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후견인을 선임하면 친권과 후견이 충돌될 염려가 있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

① 항고심 결정이 제시하는 또 다른 논거는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과 친권이 충돌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단독친권자 A가 소재불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다른 일방은 이미 사망한 경우에 A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후견인을 선임하면, A의 친권과 후견인의 권한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단독친권자 A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A의 친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다시 단독친권자 A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권이 소멸하는가, 또는 존속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조금 더 논증해 보기로 한다.

② 2011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제909조의2(2013. 7. 1. 시행)는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누가 어떻게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친권이 소멸하여 자녀에게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일단 후견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친권자가 아닌 부나 모가 생존해 있다면, 일단 생존친에게 새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생존친이 친권자가 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친권이 소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정대리인의 공백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 민법 제909조의2 조항이다. 그런데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 또는 모의 친권은 그

가 사망한 때에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친권이 소멸하므로,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 제927조의2에 단독친권자의 사망 이외의 사유로 친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도 제909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2011년 민법개정 당시 제927조의2 제1항은 단독친권자의 사망 이외의 친권소멸사유로서,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제1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제2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제3호),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을 열거하고 있었다. 이상의 4가지 사유는 모두 친권소멸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공통점이 있으므로,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909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역시 단독친권자의 사망, 친권상실과 대등하게 친권의 소멸원인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재불명이었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만약 소재불명이었던 부 또는 모의 친권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 청구하여 ‘새로’ 친권자로 지정받은 때에 비로소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제927조의2 제2항 제3호).

③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부모의 쌍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도 제909조의2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생존친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므로(양자의 친생부모는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09조 제1항에 따라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가 되며, 친생부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고심 결정의 논리에 따르면 양부모 쌍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후견이 개시되면 친권과 후견이 충돌하는 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법 체계상 그러한 해석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고심 결정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부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지 않는 한, 친권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가 아무리 오랜 기간 소재불명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상태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면 친권과 후견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부모 쌍방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별도로 친권상실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연히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는 여전히 부모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소재불명이라는 사유가 있으면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에 대한 기록이 있고, 거기에 사망이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한, 부모의 친권이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항고심 결정의 전제는 우리민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행법상 양부모 쌍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소멸을 의제하여 친권상실선고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후견인선임이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생부모 쌍방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의 소멸을 의제하여 친권상실선고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여 각각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단독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특히 항고심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의 유일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고, 친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의 일방은 사망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는 부모 쌍방이 소재불명인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위 세 가지 경우는 새로 친권자를 지정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바로 후견이 개시되어야 할 경우라는 점에서 같다. 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④ 한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후견이 개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친권상실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란 친권자인 부모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경우는 친권자의 소재불명일 것이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록되어 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록되어 있으나, 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소재불명이 되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의 허가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는데, 이는 부모의 친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자녀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아도 친권이 소멸한 것으로 의제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항고심 결정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견이 개시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 후견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부모에게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데 있을 것이다(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연락이 되어 친권행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허가 절차를 통하여 불필요한 후견개시를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단독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심판을 거쳐 후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면 부작용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전에 친권상실선고를 거치도록 강제할 이유는 없다.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위탁아동은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아니지만,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준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시설보호와 더불어 가정위탁보호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위탁보호는 국가가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대안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 비하여 위탁아동은 법적 보호를 덜 받아도 좋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항고심 결정이 취하는 논리는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 A와 B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C를 낳았는데, 어머니 B는 C를 출산한 후 가출하여 소재불명이 되었으며, 아버지 A가 C의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였다(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 C는 불상으로 되어 있다). A는 C가 1세가 될 무렵 C를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X보호시설에 맡기고, 종적을 감추었다. A가 장기간 소재불명이 되자 X보호시설의 장 Y는 구청장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C의 후견인이 되었다. D는 X보호시설에 있는 C를 후원해오다가 구청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하여 위탁부모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 C는 D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한편 C가 보호시설을 떠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X보호시설의 장 Y는 더 이상 후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가정법원은 후견인 지정 허가를 취소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A가 C를 X보호시설에 맡기고 소재불명이 되자, X보호시설의 장 Y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C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이는 A의 친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친권자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C가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되어 X보호시설을 퇴소하였으므로, X보호시설의 장 Y는 더 이상 C의 후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정법원의 후견인 지정 허가를 취소에 따라 후견이 종료되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것은 해당 미성년자가 그 보호시설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정법원의 후견인 지정 허가 취소에 의하여 X보호시설의 장 Y의 C에 대한 후견은 종료됨으로써 위탁아동 C에게는 더 이상 후견인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경우 위탁부모 D가 C의 후견인이 되고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C에게 친권자 A가 있으므로, A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후견인 선임은 불가하다고 한다. 그런데 X보호시설의 장 Y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C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C에게 친권자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법체계상 친권자가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이 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취하는 해석론에 따르면 이런 경우 C에 대한 Y의 후견이 종료

됨으로써 A의 친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C가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 D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는 A가 다시 C의 친권자가 되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Y의 후견이 종료된 후 D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따라 D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A의 친권과 충돌하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해석론은 우리민법 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우리민법은 부모의 친권이 일단 소멸한 경우에는 자동부활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909조의2와 제927조의2는 이러한 민법의 태도가 구현된 것이다(부모가 이혼하여 그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되면 다른 일방의 친권은 소멸하는데, 그 후 단독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다고 해서 이혼 시 친권자로 정하여지지 않은 다른 일방의 친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여 친권자가 될 수는 없다.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여 새로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나중에 소재불명이었던 부모의 일방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하여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909조의2와 제927조의2는 국가기관(법원)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친권의 자동부활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규정이다. 그런데 법원이 친권의 자동부활을 전제로 하여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친권상실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후견개시를 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한 비판

결국 항고심 결정의 결론대로라면 이 사안에서는 위탁아동의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 심판이 확정되지 않는 한 후견이 개시될 수 없으므로, 후견인의 선임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위탁아동의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자녀가 청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의 II.에서 이미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인다.

단독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친권이 소멸한다고 본다면, 새로 친권

자로 지정될 수 있는 부모의 다른 일방이 없는 때에는 바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민법 제928조·제932조). 항고심 결정에 따르면 민법 제927조의2 제1항은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없고, 다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유일한 친권자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친권소멸의 원인으로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바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되므로, 민법 제928조와 제932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스스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위탁부모가 민법 제932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탁부모는 위와 같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항고법원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친권상실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4)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7. 9. 26. 자 2017스561 결정)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인 위탁부모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대법관 김용덕(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정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 져야 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발표문에서 제시된 주장과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법리를 제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법원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예의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아동의 복리, 사회적 약자의 법의 보호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IV. 입법론적 해결 방안

위탁아동의 친권·후견 문제의 해결은 이제 다시 입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선 민법 제928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8조 개정시안(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음으로 친권상실과 일시 정지 신고의 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24조 개정시안(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이해관계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이해관계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에도 청구권자로서 이해관계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이 개정되면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위탁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여 심판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하여 뜻있는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으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하여 친권과 후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이 문제의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한 태도를 보여 왔다. 어느 위탁아동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무얼 하느냐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기/획/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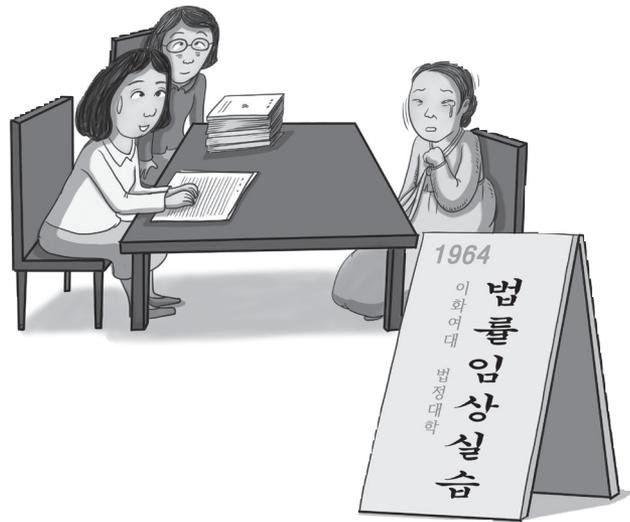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㉓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3)

법률임상교육 시작

1964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법률임상교육 시작

1963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으로 취임한 이태영 소장은 1964년 3월 이화여대 법정대 법률학과와 여성법률상담소를 자매결연의 형태로 연결시키고 법률학과 4학년 학생들이 상담소에서 실습을 거치도록 했다. 학생들의 법학공부는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여성법률상담소를 법률임상실습교육장으로 선정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1965년부터 법률학과 교과과정에 <여성운동사>와 <가정법률상담 실습>을 새로운 과목으로 추가하여 자신이 직접 강단에 섰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 이 소장은 한국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적 현실과 그것을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상담 심리학>이라는 당시로서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는 파격적인 교과목까지 신설하였는데, 처음 일부 학생들은 이렇듯 새로운 시도에 대해 불평도 했으나, 상담소에서 실습을 통해 상담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생소하게 생각했던 법률상담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해 그 참뜻을 터득해 나갔다.

상담소에서의 실습은 4학년에 한해서 1학기과 2학기예 각각 30명씩 내담자를 상대로 직접 상담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때 물론 상담소의 경험 있는 간사들이 옆에서 일일이 지도해 두는 방식을 택했다. 교실에서 이론만 배워 오던 학생들로서는 하나의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상담실에 들어서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4, 5일이 지나 30건의 상담을 마칠 때쯤이면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확인하거나 깨닫거나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상담소의 법률임상실습은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소의 법률임상실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사법연수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전문기관실무수습과 각 대학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임상실습, 사회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편집부



▲ 현재 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임상실습 활동



부모와 자녀 사이 언어폭력과 상호폭력 등 가정폭력 상담위탁 증가 추세

사건번호 2016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8회,
가족상담 어머니 1회, 여동생 3회,
 전화상담 2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2. 12. ~ 2017. 7. 6.

상담경과

행위자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와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부부사이에 1녀(9세)를 두었다. 행위자는 정신지체 3급인데 다소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소득활동도 하고 있다. 행위자는 2016년 9월 사건 당일, 육아방식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었

다. 본 사건 후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피해시설에 입소하고 전학을 시켜 행위자는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초상담에 행위자는 어머니와 동행하여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등 남편으로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고, 육아에 소홀하였으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갈등요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10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 모두 소득생활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생활비를 전혀 보태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는데, 딸을 보고 싶어 하며 양육욕구를 강하게 피력하였다.

상담에 임한지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소장 송달로 확인되었고 행위자는 여동생을 동행하여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딸의 소재와 안위를 염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동생은 행위자와 가족 모두 이혼에는 찬성하지만 피해자의 계획적인 이혼청구에 대하여 실망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행위자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고 구조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본 상담소에서는 답변서 및 반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구조 지원을 하였다. 또한, 상담자는 행위자의 이혼 및 자녀 문

제 등에 대한 의사가 결정되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합의를 권유하였으며, 집단상담에서는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행위자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였다.

행위자는 상담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여 이혼은 불가피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문제였는데 재판 진행 중에 상담을 종결하게 되었다. 행위자의 의식의 한계로 피해자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나, 집단상담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구성원들의 경험에도 관심을 갖는 경험을 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번호 2016버 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4회,
부모집단상담 8회,
배우자 전화상담 2회 등
총 25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 2. ~ 2017. 6. 3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딸, 24세)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평소 부모가 오빠와 자신을 차별한다고 불평을 해왔다. 2016년 9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배우자의 부재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준 술을 같이 마시자고 청하여 함께 마시며 대화하던 중, 오빠와의 차별을 문제 삼으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0회

가랑 때리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본 사건 이후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 준비를 위하여 학교 부근에 원룸을 얻어 지내게 되어 행위자와 피해자는 거의 접촉하지 않고 지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두 번의 폭력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가 어린 시절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 본 사건 이후 행위자가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시간이 더 경과한 상담 초기에 행위자가 다시 화해를 시도하여 화해하였다. 행위자는 피해를 아들과 차별한 적이 없는데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이 난감하다고 하였고, 직업상 술은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하였다. 부부갈등은 없으며,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귀에 피어싱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문제로 속을 썩일 때 폭언을 한 적이 있는데 언어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담을 통해 새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배우자에 의하면 행위자는 권위적이고 강한 성격이지만 아내에게 폭력을 한 적은 없고, 가끔 화를 내지만 미안해하며 바로 대화를 시도하였다고 한다. 배우자가 방임형 어머니라면 행위자는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규범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아버지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행위자가 이를 통제하면서 악역을 맡은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음을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교육강좌, 음주문제 상담을 통하여 대화법과 음주문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간을 가진 후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참여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고 하였는데, 집단상담 진행자와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직면하여 과거 행동들을 되짚어보면서 반성하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배우자에 의하면 행위자가 “학교에서는 왜 이러한 강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상담의 내용에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고 한다. 배우자는 행위자를 총체적으로 비폭력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는데, 오히려 행위자는 “내가 과거에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위자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바로 폭력아빠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행위자는 본 사건의 경험을 매우 다행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사건번호 2016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부모집단상담 4회
배우자 개별상담 1회, 부모집단상담 9회,
부부 상담 3회, 부부 부모집단상담 4회,
행위자(아들) 보호관찰관과 통화,
상담결과 공유 1회 등
총 25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 6. ~ 2017. 6. 29.

상담경과

본 건은 아버지와 아들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아들은 청소년기부터 30대인 지금까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일명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계속하여 왔는데, 4, 5년 전 부터는 부모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등 부모와 아들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2016년 7월 사건 당일, 아버지와 아들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밀치자 아들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것에 놀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부자가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며 아들은 6개월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아버지는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현재 모습이 부모의 잘못, 특히 어머니인 배우자의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언어폭력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아들이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식이나 소비도 전혀 하지 않고 라면으로 연명을 하며 음식을 사다 놓아도 상해서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 단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상담에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아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집을 방문하여 아들과 2회 상담을 한 보호관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들이 보호관찰소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여 보호관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 외에 집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은 아들에 대한 개입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부부는 아들이 어린 시절 애정표현을 잘해주지 못하였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과 친밀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본 사건 당시에는 그동안의 갈등으로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는 정리도 하였다. 부부는 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숙고하였고, 아들을 자극하거나 문제이라는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 현재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고 충돌도 재발되지 않았다. 부부는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아파 누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겠다고 하였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잘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아들의 현재 모습에 자신들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아들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4회,
집단상담 9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4회, 부부캠프 1회,
자녀 미술치료프로그램 1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 10. ~ 2017. 6. 2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3세, 1세)가 있다. 2016년 7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결혼기념일에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따지는 피해자에게 포장해 온 음식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허리벨트로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결혼 후 행위자는 4년 동안 공무원 임용시험공부를 하였고 교사인 피해자가 생활비를 감당하였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대부분 담당하던 행위자가 공부에 집중하면서 부부갈등이 심해졌고, 양가에 대한 감정까지 나빠져 부부싸움에서 원가족 문제가 매번 이슈가 되었다. 본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고, 행위자는 거주하던 주택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직장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였다. 행위자의 취업은 결혼 후 처음이었다.

부부집단상담에서 부부는 상대방을 공격, 비난하는 대화 방식을 보였고, 이혼 또는 재결합을 오가며 불안정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그동안 부부갈등이 있을 때 피해자가 이혼하지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로 인해 결혼생활이 더욱 불안

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부부는 이번 기회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담 후반기에 들어서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9월 6일이 협의이혼 의사확인이기로 지정되었다. 피해자는 별거중인 상태에서 행위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과거 행위자로부터의 폭력 특히 언어폭력 피해경험에 비추어 행위자와 미래를 함께 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본 사건 이전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원망하는 점도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행위자는 상담에 참여하면서 부부문제를 숙고한 결과 피해자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피해자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부는 상담기간 중 부부문제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노력한 끝에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신중한 숙려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의 자녀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한 의식을 점검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아버지는 큰 사업을 하시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던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아버지가 사업으로 인하여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많은 재산들은 회사와 관련된 것들이라 정확하게 그 가액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분쟁의 소지가 적을지 알고 싶습니다.

Q

A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나 상속인 등 사람에게 대한 파산이 아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입니다.

위 법에 따르면,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법 제299조 제1항). 위 신청권자들은 ① 상속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 ② 위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 또는 ③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라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제1항 및 제2항).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법원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위법 제3조 제6항).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인은 청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는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맡기고 있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경우 그 이후의 절차인 채권조사, 재산수집, 안분변제 절차 등을 상속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를 따르게 되면, 파산관재인이라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하여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청산절차의 이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자산규모가 크고 환가절차가 복잡할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많거나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배당이 어려운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집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통한 청산이 상속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새로 들어온 책과 자료집 2016.11~2017.10

책

물권법

친족상속법

성년후견 심판실무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주석 민법: 친족 1-4

인간 성행동 심리학

모래놀이 상담

재난대응 위기상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

안전심리

담론

인식론과 논리학

EU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목적의 힘

나이 들을 배우다

다문화사회의 국가정책성과 다문화정책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가정폭력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미국 여성의 역사, 또 하나의 역사

여성주의 교육, 시공을 묻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비양육부모 길라잡이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무현의 민주주의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다문화가정 판결례 해설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8권1집 상,하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교사 전문성과 수업

신기후체제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파리의 공원들

외비우스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

매혹의 근대, 일상의 모험

몽클

조선 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시베리아 문학기행

10월 항쟁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고대에서 봉건사회로의 이행

송덕수 | 박영사 | 2017

양창수, 김재형 | 법문사 | 2016

김호석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2015

이현곤 | 법률신문사 | 2015

김주수, 김상용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6

Justin J. Lehmler |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2016

조희순 | 아카데미프레스 | 2016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 학지사 | 2017

야콥 슈프랑거, 하인리히 크라머 | 우물이 있는 집 | 2016

정진우 | 청문각출판 | 2017

신영복 | 돌베개 | 2015

가츠라 쇼류 외 | 씨아이알 | 2017

이연호 외 | 박영사 | 2017

댄 폰테프랙트 | KMAC | 2016

마거릿 크록생크 | 동녘 | 2016

최영은 | 북코리아 | 2016

이병천 외 | 한울아카데미 | 2016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2016

이창신 | 당대 | 2017

부산여성사회교육원 | 신청 | 2016

정화진 역음 | 교양인 | 2017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201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2016

김종철 외 | 인간사랑 | 2016

신카와 도시미쓰 | 후마니타스 | 2016

선정원 | 대영문화사 | 2017

폴커 키츠 | 한스미디어 | 2017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 2016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2016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2016

김상훈 외 | 세정출판사 | 2017

리처드 포스너 | 한울아카데미 | 2016

법무부 | 법무부 | 2016

오영범 | 교육과학사 | 2017

최영수, 전의찬 | 동화기술 | 2016

계기석 | 한숲 | 2016

정과리 | 문학과지성사 | 2016

김지영 | 돌베개 | 2016

신경림 | 책임는섬 | 2017

조수미 | 경진출판 | 2016

이정식 | 서울문화사 | 2017

김상숙 | 돌베개 | 2016

민유기 외 | 책과함께 | 2016

이기영 | 사회평론 | 2017 등

곽배희 소장 기증자료

저널리즘의 미래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폭력 이미지 재난

개발새발 예술 인생

이 유쾌한 씨를 보라

환상방향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

2005 제2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불멸 1-2

코레예바의 눈물

낯선 바람을 따라 떠나다

오래된 미래

이정환 외 | 인물과사상사 | 2015

정운찬 | 나무와 숲 | 1998

김육훈 외 | 민연 | 201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미지연구소 | 엘피 | 2012

이하 | 썰물과밀물 | 2015

주재환 | 미술문화 | 2001

배두일 | 산악문화 | 1993

김남주 | 창작과비평사 | 1995

한강 외 | 문학사상 | 2006

류은경 | 책마실 | 2014

손석춘 | 동하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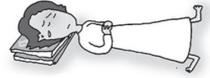
신혜은 | 교보문고 | 2014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중앙북스 | 2007 등

세종 기증도서 173권, 여성정책연구원 기증도서 33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 기증도서 15부
상담소 및 상담소 지부 자료집 28부 포함 모두 400 여권 등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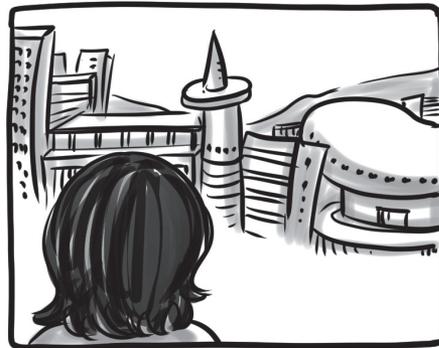
최정아 사서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78 밥하는 엄마



글 | 그림 | 장차현실

사춘기에 접어들며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를 보며
엄마인 나는 불안하다.



엄마의 눈에는 세상이 낯설 만큼 달라져있다.
내게 익숙한 것은 박물관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나의 시선이 아이에게 미래를 보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알고 있는 아이의 변화하는 모습!!
그것이 진실이라 맘 속에 되뇌고 ...
이제 모든 선택을 아이에게 맡기고

나는 밥만 잘하기로 마음 먹었다.



상.담.소 . 소.식



본소 창립 6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11월 3일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창립 61주년 기념 (2017년 세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2006년 9월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가정위탁 관련 법 개정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으며, 2016년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에 집중하여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소 광배희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끌었으며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이라는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필현 관장(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유주현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신인호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등이 참석했으며, 관계기관 및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본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신목고등학교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교사(10명), 10월 29일에는 동일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30명)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와 가족법개정운동에서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도적인 역할 및 그 의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상담소에 전시되어 있는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전 및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본소가 한국사회의 법의식 함양과 양성평등,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또 ‘범죄의 시작부터 끝까지-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단한 강의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역할 등을 맡아 형사모의재판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인권 등에 대한 내용을 생활 속의 법률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관련사진 2번)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부터 정신과전문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난 10월 26일에는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공포”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강사는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사회화를 위해 연합을 하는데 특히 부부는 사랑으로 연합을 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서로에 대한 관계의 규칙과 정도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상대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며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히려 갈등이 많아야 성숙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절을 통해 자신의 온전한 삶을 영위하여야 행복한 부부관계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50여명이 참석하였고 부부간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상대에 맞추기 보다는 바르게 거절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오는 11월30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모임 및 재교육

지난 10월 27일 본소 자원봉사자 모임으로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하는 창덕궁 후원 관람 및 점심식사가 있었다. 강경숙, 김정혜, 문은진, 문은희, 유문숙, 홍진범 자원봉사자와 조은경, 천다라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문득현 공익법무관 부임

지난 10월 26일 장민수 공익법무관이 전보되었고 후임으로 문득현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 25기)이 본소에 부임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10.11. 법률구조체험교육2 - 신목고
- 조은경 상담위원
- 10.16. 보현의집 노숙인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 10.17. 학교폭력예방교육19
강서공업고등학교 - 폭력예방교육(교사대상)
- 복미영 상담위원
- 10.19. 법률구조체험교육3-동일중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장민수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9일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시민사회단체 연구수요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27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주관 업무협력기관 사례발표회에 황현정 변호사, 정연이 상담위원과 참석하였으며, 성남지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31일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여성·청소년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개최된 제4회 윤후정 통일포럼에 광배희 소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광배희 소장, 성남지부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본소 광배희 소장은 10월 16일 홍보전문업체 베리 모던트 최성희 부사장 등과 내년도 상담소 홍보 기획 회의를 가졌고, 20일에는 인천 송도지부 설립 준비 중인 이영미 소장 예정자와 정영근 변호사의 내방을 받고 설립 관련에 대해 논의 했다. 27일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31일에는 이화여대 ECC 이삼봉 홀에서 '통일과 새로운 목소리'를 주제로 열린 '제4회 윤후정 통일포럼'에 참석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권지연,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서암, 김영주, 김지후, 김태주,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윤원섭, 이병현, 진보라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수지, 김혜림, 박민경, 배준모, 이계복, 최민서
남서연, 맹현규, 이민주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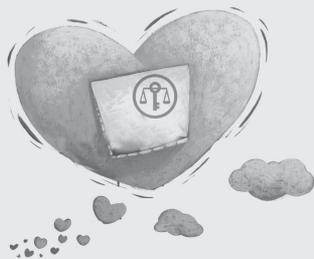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도윤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강릉지원 위탁 가정폭력가해자 12명 대상으로 교정·치료프로그램 실시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2회,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10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조정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0월 14일, 28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협력하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수희, 이태현, 김진원, 김미조, 이재동, 이서준, 이용원, 장익현, 이희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6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구민혜, 김소이, 박지현, 이상훈, 이홍재, 임용호, 정원진, 한승일, 허정택, 홍성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10월 27일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에서 성남지부 개소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지법원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3회 실시하였다.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8회 배포하였다. 이혜민, 김승구, 김정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10월 21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과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가족캠프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실시하였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31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중구지부

서울가정법원위탁 가정폭력행위자 28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동진, 홍지혜, 이영주, 황은하, 여지은, 김형석, 고승현,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10월 2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1회,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10월 21일 이사회 및 야유회를 실시하였다. 10월 26일~27일 전주비빔밥축제 기간에 가정폭력예방캠페인 및 무료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8회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최대일, 최혜옥, 하동권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1회,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3회 실시하였다. 10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재영, 남상업, 오유경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9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7일~28일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 찾기 부부캠프를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22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2017년 9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9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486건으로 본부가 7,009건, 지부가 5,477건이었다.

본부는 6,399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55건·소장 등 서류작성 113건·소송구조 4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697건·화해조정 684건·소장 등 서류작성 23건·소송구조 73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39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8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8%→1.1%), 부부갈등(1.9%→2.1%), 이혼(17.4%→19.6%), 위자료·재산분할(8.3%→10.9%), 친권·양육권(4.0%→5.7%), 면접교섭권(2.2%→2.7%), 인지(1.1%→1.6%), 친생자존부(1.9%→2.3%), 유언·상속(4.5%→6.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4%→4.0%),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39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58건(18.1%), 전화상담 4,786건(74.8%), 통신 및 인터넷상담 454건(7.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10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5,812			
법률상담 (5,351)			
면접	전화	통신	지상
902	4,041	407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54		71	36

* 2017/10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5,434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009	1,158	4,786	454		지상 1	6,399	455	113	42
강릉 (033) 652-9555	165	155	8				163			2
구리·남양주 (031) 551-9976	181	59	55				114	64		3
군산 (063) 442-1560	110	44	23				67	37		6
대구 (053) 745-4501	443	95	6	7		출장 144	252	187		4
대전 (042) 520-5258	231	45	183				228		3	
동해 (033) 535-0188	100	42	57			출장 1	100			
목포 (061) 273-2514	175		172	1			173	1		1
부천 (032) 667-2314	279	47	176				223	55		1
성남 (031) 707-6661	273	137	66			출장 28	231	36	4	2
수원 (031) 243-4600	475	155	153	3		출장 49	360	111	2	2
순천 (061) 753-9910	151	33	109				142	4		5
충구 (02)2238-6554	332	205	126				331			1
안동 (054) 856-4200	46	16	27				43	2		1
익산 (063) 851-5113	221	49	162			출장 5	216		2	3
인천 (032) 865-1120	390	198	168				366	4		20
전주 (063) 244-2930	293	123	116	25	20		284			9
정읍 (063) 535-3705	142	85	49				134	7	1	
진주 (055) 746-7975	149	33	58				91	58		
청원·마산 (055) 261-0280	311	172	110	1			283	21	1	6
청주 (043) 257-0088	412	251	84	3			338	68	6	
춘천 (033) 257-4688	250	119	21			출장 110	250			
태백 (033) 554-4004	60	40	10			출장 10	60			
평택·안성 (031) 611-4251	122	52	19	1		출장 22	94	22	4	2
제천 (043) 644-5690	92	13	74				87			5
포항 (054) 283-7555	74	9	58				67	7		
지부총상담	5,477	2,177	2,090	41	20	출장 369	4,697	684	23	73
총 상담	12,486	3,335	6,876	495	20	출장 369 지상 1	11,096	1,139	136	115

** 2017/9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4,327건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폐업 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50대 여성의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58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 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만58세)은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후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신청인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방보조와 의류판매 등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지속해오던 신청인은 2011년경 뇌출혈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던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가계수입이 없어지자 신청인의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퇴원 후 자녀와 함께 창업자금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채무만 짊어진 채 2015년경 폐업을 하였다. 이후 동업을 하였던 신청인의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경계성 성격장애 등을 겪으며 재취업에 실패하였고, 신청인은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약 7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채무에 대한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8.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현병으로 가출하여 2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114

담당 : 김효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4세)와 피고(여, 54세)는 1990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세 명의 자녀(남 27세, 26세, 24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셋째 자녀를 출산하고 1996년경 가출하여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원고는 2012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편마비 증세가 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 원고를 부양하던 첫째 자녀는 2012년경 행방 불명이 되었고 둘째 자녀도 생활고를 겪고 있다. 심지어 셋째 자녀는 교도소 수감 중이라 원고는 자녀들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원고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전기와 가스공급까지 끊긴 상태로 생활하다가 2016년 1월경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외상상태로 발견되어 1년간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원고는 여러 약물,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뇌병변 장애 4급을 판정받았고 편마비로 인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적지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7.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도박에 빠져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7-100

담당 : 심미숙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5세)와 피고(남, 63세)는 1984년 3월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결혼 초 원고에게 포커나 고스톱 같은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피고의 의처증으로 인해 원고는 직장을 옮기기까지 하였다. 이후 원고에 대한 피고의 폭행은 점차 심해져 원고가 피고에게 머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2013년 8월 경에는 피고가 던진 물품에 원고가 이마를 맞아 큰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으며, 급기야 2015년 10월 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사판결을 받았다. 현재 원고는 피고와 별거 중에 있으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피고로 인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서울가정법원 2017. 7.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40대 여성의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125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 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3세)은 2000년경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동대문 쇼핑몰에서 판매직으로 근무를 하다 2002년경 동대문에 작은 옷 가게를 열었다. 이후 신청인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때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빚을 내어 가게운영에 보탬지만, 적자를 이기지 못해 결국 폐업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혼인생활 당시 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었는데, 전 배우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신

청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폐업 후 일용직으로 일하였지만,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인해 그나마 하고 있던 일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에 대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8.1.)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내를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한 마마보이 남편에 대한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6-375

담당 : 문현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피고(반소원고, 여, 34세)와 원고(반소피고, 남, 30세)는 2013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3세), 사건본인2(남, 1세)를 두고 있다. 원고는 매일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부부간의 일을 일일이 보고하고 부부가 결정할 일을 어머니와 상의해 결정된 사항을 피고에게 지시, 통보하였다. 만약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임신 중에도 피고를 폭행하였고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피고의 전화기를 빼앗아 부수고 사건본인들 앞에서도 피고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2016년 4월경 피고가 아무리 달래도 생후 1년 된 사건본인2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원고는 애를 왜 계속 울리고 있냐며 피고의 무릎을 힘껏 찼고 피고는 앞으로 꼬꾸라졌다. 이어 원고는 피고를 깔고 앉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과 바닥에 수차례 박았고 피고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부모와 피고 부부가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원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2017.7.13.)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 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21일에 각 지급한다.

4.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 하에 시간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 명절, 휴가, 방학, 어린이날, 생일 등에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면접교섭의 기간·장소를 정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품(순번 4, 7~9, 12, 18, 23, 31, 35, 41~43)을 2017. 8. 31.까지 반환한다.

6.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7. 원·피고 쌍방은 향후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각 포기한다.

8. 본소 및 반소를 포함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자녀를 유기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521

담당 : 송성욱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4세)와 피고(남, 46세)는 2004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남, 13)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와 만나 동업을 하다 동거하게 되었는데, 동업한 사업에서 생긴 채무 문제로 갈등하였다. 2003년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친정에서 약 3개월 동안 생활하였으나 피고가 거제시로 거처를 옮기면서, 원고와 피고의 동거관계가 정리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별 후 사건본인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4년 사건본인을 출산하면서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출산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원고는 약 1년간 피고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70만원은

원고와 동업한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다. 그 외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나 사건본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관계 정리 후 약 10회 정도의 만남을 가졌을 뿐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5.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7,000,000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7. 5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비혼모 자녀 인지 및 친권과 양육자 지정

법률구조 2017-8

담당 : 이새나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2(여, 24세)와 피고(남, 24세)는 2015년 7월 경부터 8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인 2015년 12월 원고2는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의 부모는 입양 및 임신중절 수술을 종용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을 겪으며, 원고2는 미혼 모시설에 입소하여 2016년 8월경 원고1을 출산하였다. 피고는 원고2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원고2는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성본 계속 사용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25.)

1. 원고1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1(사건본인,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2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2에게 원고1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 성립일 다음날부터 원고1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와 원고1의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일정: 월 1회,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같은 날 15시까지

나. 인도방법: 피고가 원고들의 주거지로 원고1을 데리러 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기로 한다.

다. 위 면접교섭은 원고1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라. 원고2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는 원고1이 모의 성을 따라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에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62

담당 : 강진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5세)와 피고(남, 35세)는 2016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여, 2세)을 두었다. 피고는 재산상태, 직업을 속이고 원고와 혼인하였다. 혼인 후에도 고정된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였고, 구직활동도 게을리 하였으며, 일용직 노동도 꾸준히 하지 않았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가거나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일을 하여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부모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건본인의 출생 후에는 합가하기로 하였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7. 8.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7.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자신의 자녀가
상간녀의 자녀로 기재된 것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통해 바로잡음**

법률구조 2017-143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73세)는 피고(남, 41세)의 친모이다. 피고의 친부는 1962년경부터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망 고○○와 외도를 하고 1968년경 혼인신고까지 하였다. 1976년경 피고가 태어나자 피고의 친부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피고를 망 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고○○가 피고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

1. 피고와 망 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7년 11월 교육강좌

2018년 초·중·고등교사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 ▶ 연수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 대상 및 인원 : 서울 및 전국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종사자 40명
- ▶ 연수 일정 : 2018년 1월 9일 (화) ~ 1월 11일 (목)
10시 ~ 16시 30분 (예정)
- ▶ 이수 시간 : 15시간 (1학점)
- ▶ 평가 : 없음 (연수과정 80% 이상- 12 시간- 출석시 이수증 발급)
- ▶ 신청방법 : 신청서를 FAX (02- 780-0485) 로 전송
또는 이메일 (edu@lawhome.or.kr) 로 전송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마감시 까지
(전화로 확인 요망, ☎ 02-782-3601)
- ▶ 과 정 :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혼인·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성년 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임대차에 관한 법률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폭력예방교육 등 강의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 교육

노숙인, 취약계층 시민들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시설이용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 및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 일시 : 2017년 11월 16일(목), 오후 2시
- ▶ 대상 : 복지시설 이용자, 시설 실무자 외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내용 :
 1.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과 명의도용 피해방지 법교육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신용회복절차 및 지원 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3.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제도 안내 - LH주택공사
 4. 건강보험 결손처분 안내 - 건강보험공단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1월 13일 / 11월 27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11월은 마지막 주 목요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1월 30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등지고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캐서린 한 대표, 한승희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1월 9일(목)	자기강요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12월 14일(목)	축하와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기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2018년 초·중·고등교사직무연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 교육

노숙인, 취약계층 시민들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시설이용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 및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등지교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